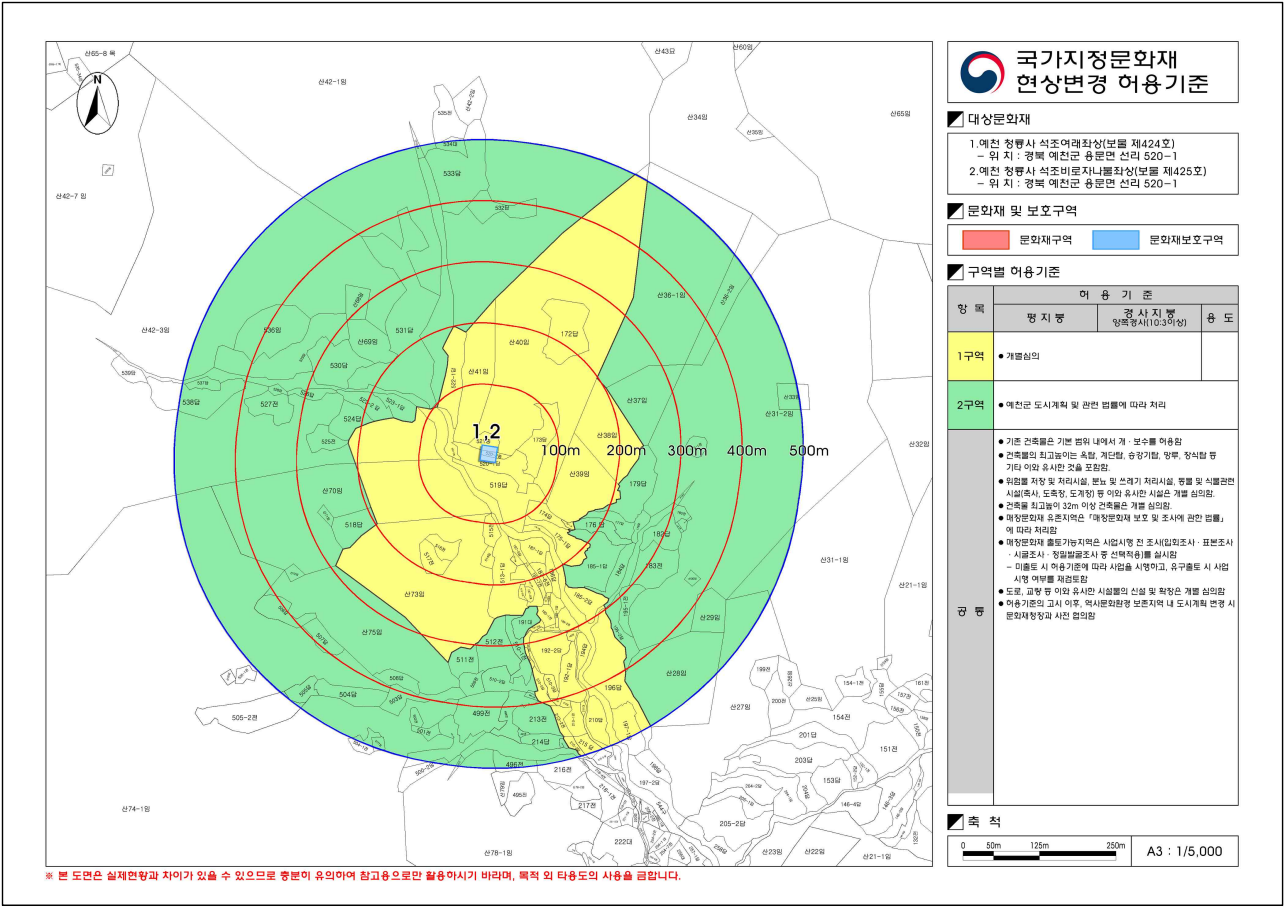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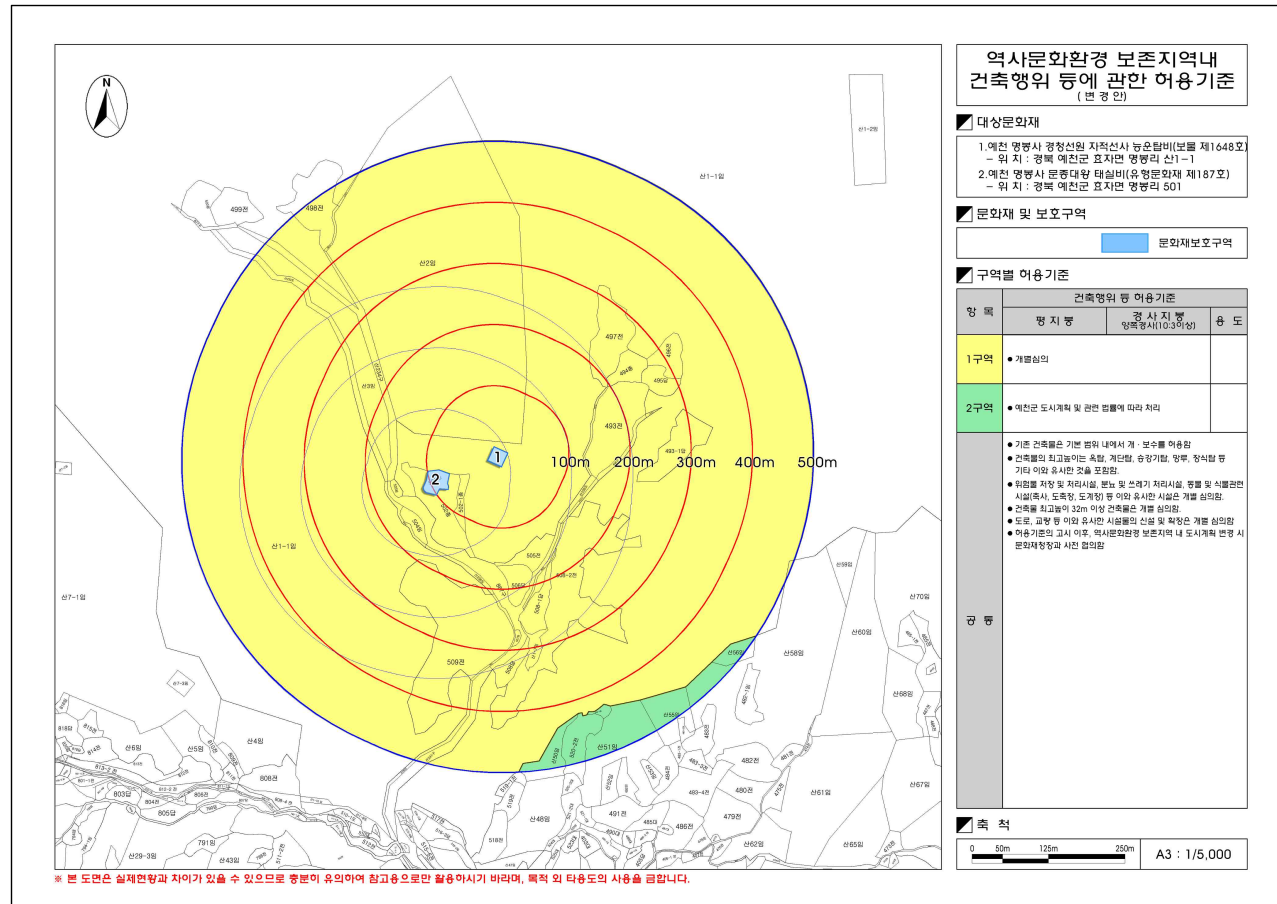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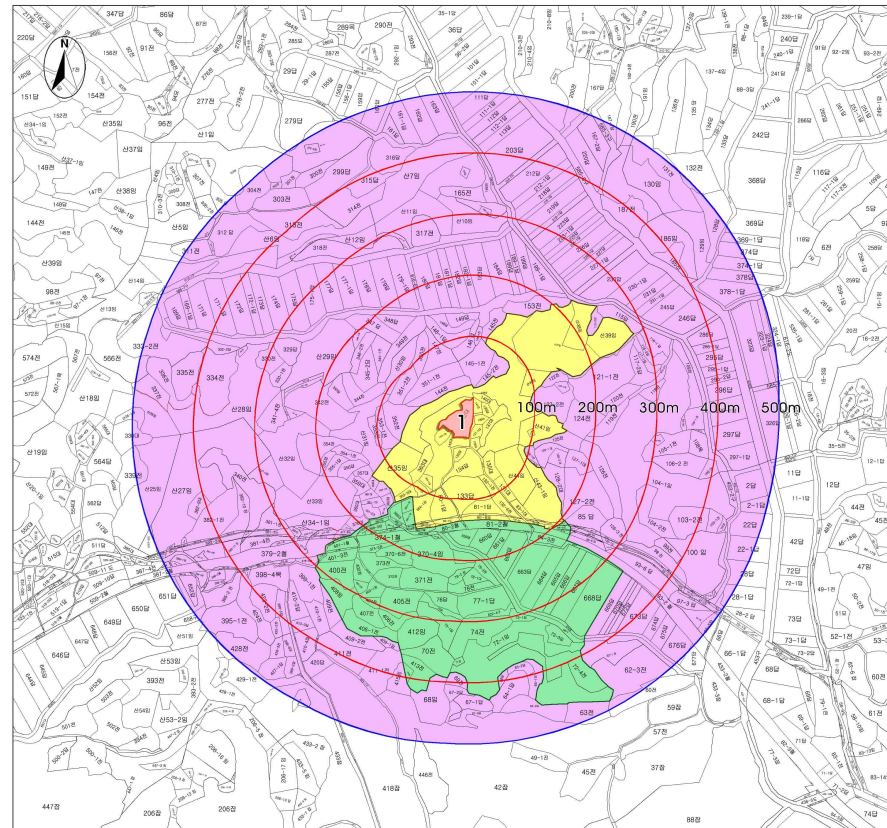
보물 제424호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제425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



보물 제1648호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



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울현동 물체당



※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(변경안)

대상문화재

1.예천 읍현동 불제당(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)
- 위 치 : 예천군 유천면 읍현리 14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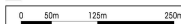
■ 문화재 및 보호구역

문화재구역

■ 구역별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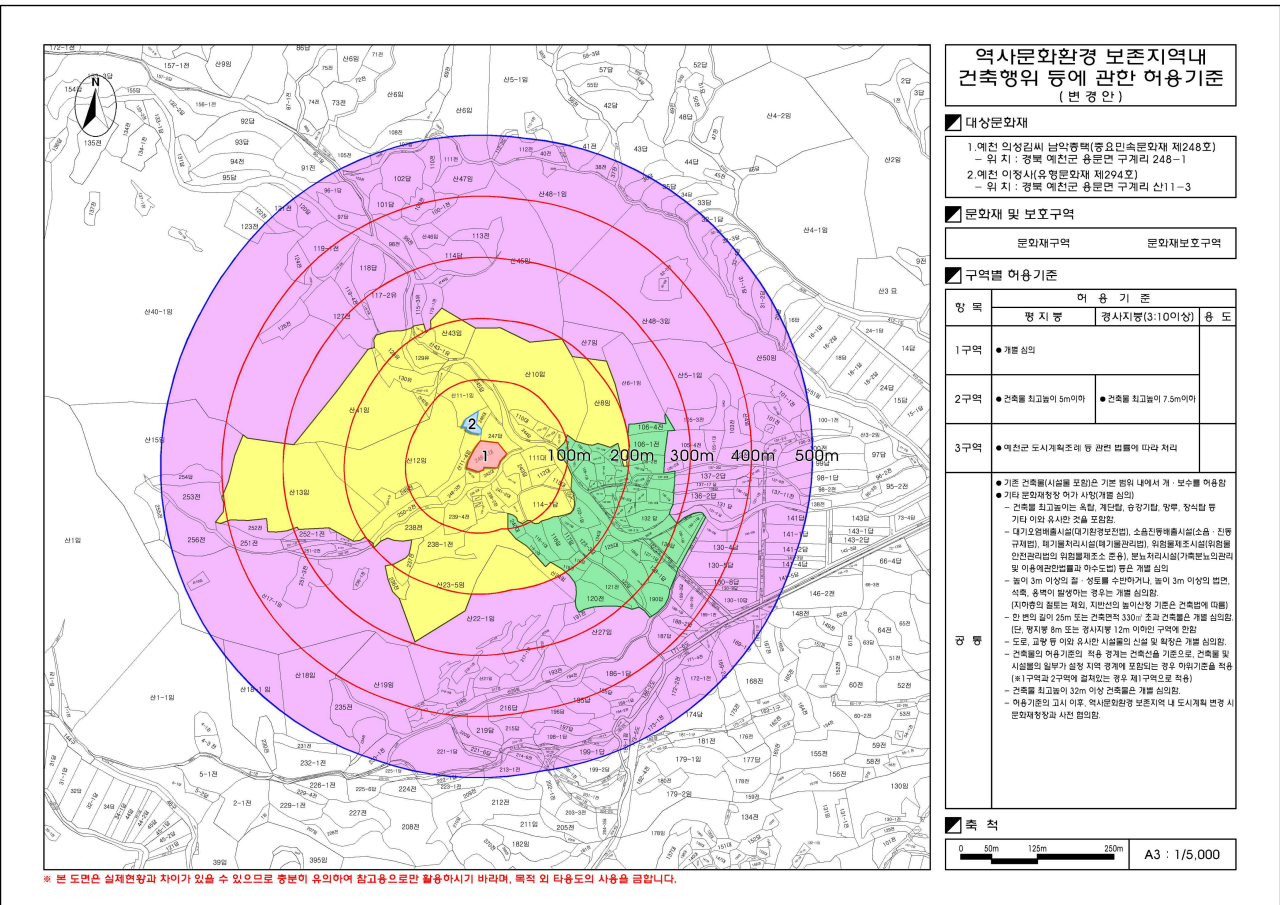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추척



A3 : 1/5,000

중요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(변경안)

- 대상문화재**
 1.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(중요민속문화재 제248호)
 - 위치 :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-1
 2. 예천 이정사(유형문화재 제294호)
 - 위치 :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산11-3

문화재구역	문화재보호구역
-------	---------

구역을 허용기준

항 목	허 용 기 준	
	평 지 종	경사지형(3:10이상) 용 도
1구역	●개별 심의	
2구역	●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●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	
3구역	●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
공 통	●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보수를 허용함 ●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(개별 심의)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방막, 창고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대가오양배출시설(폐기물양조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), 위험물제조소(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과 마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 - 높이 3m 이하의 담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하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마형의 돌담는 제외, 지반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- 한 번의 깊이 25c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형 8m 또는 경사지형 12m 이하의 구역에 한함)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설을 확장은 개별 심의함.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장치는 건축기준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해당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마땅기준을 적용 (※ 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) 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-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고 시한 협의함.	

축척 0 50m 125m 250m A3 : 1/5,000
--